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회 의 명 :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 일 시 : 2024. 9. 27.(금) 오후 6시
- 장 소 :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경기장B 내
- 회의방법 : 대면회의
- 참석인원 : 재적대의원 총 13인 중 7인 참석

소 속	성명 / 직위	참석유무	소 속	성명 / 직위	참석유무
서울특별시 장애인양궁협회	정미자 회장	○	경기도 장애인양궁협회	유정만 회장	○
부산광역시 장애인양궁협회	최용준 회장	X	전라북도 장애인양궁협회	남교현 회장	X
대구광역시 장애인양궁협회	장종길 회장	X	전라남도 장애인양궁협회	박준철 부회장 (회장 대리)	○
인천광역시 장애인양궁협회	김진수 회장	X	경상북도 장애인양궁협회	추연경 회장	X
광주광역시 장애인양궁협회	이종호 회장	○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정진영 위원장 선수위원회	○
대전광역시 장애인양궁협회	김선공 회장	X	대한장애인양궁협회	한민경 위원장 심판위원회	○
울산광역시 장애인양궁협회	-	-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정영주 위원장 지도자협의회	○

□ 심의안건

안건번호	안 건 내 용	심의결과
1호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정관 개정의 건 심의	수정의결

- 붙임 1.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결과 주요내용 1부.
 2.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록 1부.
 3. 대의원 서명록 및 회의사진 1부.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결과 주요내용

□ 안건 1.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정관 개정의 건

○ 심의결과: 수정의결

- 주요내용

- 제6조(전국규모연맹체) “장애인양궁협회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문구에서 “당해” 문구 삭제 취소
- 제23조(회장의 선출) ②항 “장애인양궁협회의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의 개정문구 중 “장애인양궁협회의” 문구 삭제 취소
- 제23조(회장의 선출) ②항의3 “선수 대표 4명(장애인양궁협회 선수위원장 1명은 당연직, 선수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3명)”의 개정문구 중 “장애인양궁협회” 문구 삭제 취소
- 제23조(회장의 선출) ⑨항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제9항에 따르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의 개정문구 중 “제9항” 문구 “제8항”으로 수정
- 제24조(임원선임) ⑧항의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장애인체육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 문구 중 “제28조” 문구 “제29조”로 개정
- 제58조(규정 제·개정) ①항의 “장애인양궁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장애인양궁협회의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문구 “장애인양궁협회는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장애인양궁협회의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로 개정
- 부칙에 “제2조(경과조치)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는 이 정관개정 이후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문구 신설
- 나머지 기존 개정문구는 원안대로 가결

[붙임1]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록	
회의일시	<input type="checkbox"/> 2024년 9월 27일(금) 오후 6시
회의방법	<input type="checkbox"/> 대면회의 진행
회의장소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경기장B (전남 순천시 연향동 814-25)
참석인원	<input type="checkbox"/> 재적대의원 13인 중 7인 참석 참석인원 이경렬 의장, 정미자 대의원, 이종호 대의원, 유정만 대의원, 정진영 선수위원장, 한민경 심판위원장, 정영주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박준철 부회장(이우삼 회장 대리)
회의내용	<input type="checkbox"/> 심의안건 안건 1호: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정관 개정의 건 심의
심의안건 의견개진	<p>○김문선 간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진행을 맡은 사무국장 김문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대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건상 국민의례와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보고입니다. 재적대의원 13인 중 7인의 대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우리 협회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경렬 의장님께서 개회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p> <p>○이경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p> <p>○김문선 간사 이어서 이경렬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p> <p>○이경렬 의장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대회장에 직접 와주셔서 격려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저희가 2024 파리패럴림픽대회에 참가했었는데, 대회결과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다음 패럴림픽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 심의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정관 개정의</p>

건 심의입니다. 간사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문선 간사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2023년 12월14일에 대한장애인체육회 게시판에 가맹단체 제 규정 정비연구용역 결과안내 및 2024년 7월26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육성부에서 2024년 가맹단체 회장선거 관련 규정 개정 안내 및 표준안을 안내함에 따라 지난 8월9일, 8월23일 우리협회 법제상별위원회와 임시이사회를 거쳐서 오늘 임시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눠드린 안건자료 4페이지~19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자료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개정안 중 대부분 문구 수정사항입니다. 문구 수정사항은 시간관계상 나눠드린 자료를 대신할까 합니다. 안건 개정사항 및 신설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권리와 의무) 제3항 장애인양궁협회는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결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결 후 장애인체육회에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신설을 했고요, 제23조 제8항 제22조 제9항에도 불구하고 잔여기간 1년 미만의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2조 제10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라고 신설하였습니다. 9항부터 14항까지는 항이 밀리면서 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11항 문구 추가내용으로서 회장선거 시 장애인양궁협회 기탁금의 금액 결정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서 정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24조(임원선임) 4항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1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세무사 자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는 체육회 정관 개정안에 의해 반영하였습니다. 그 중 신설항목은 2항 7호 사회적 물의, 장애인양궁협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제7항 임원은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서 선임될 수 없다. 제38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신설내용은 4항은 시, 도장애인체육회의 가맹심사 의무 명확화로 하기 위한 신설하였고, 5항은 시, 도장애인체육회 미가맹 시, 도지부의 관리감독 감독 요건을 마련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39조의3(장애인양궁협회 시, 도지부 회장의 선출) 4항 직무정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양궁협회(시도지부, 시군지부 포함) 시, 도장애인체육회(시군구 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원이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 전 9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과 동시에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사무국 규정) 사무국 운영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정리를 3호 위임전결규정, 7호 선수위원회 운영규정, 8호 지도자협의회 운영규정, 9호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삭제하고 개정안 신설 내용으로 10호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정리하였으며, 제11호 회장선거관리규정 신설내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제58조(정관변경) 제59조 제2항 중복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제59조부터 조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정관 개정안 검토 결과 아래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 요청사항이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

제6조(전국규모연맹체) “장애인양궁협회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문구에서 “당해” 문구 삭제 취소, **제23조(회장의 선출)** ②항 “**장애인양궁협회의**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의 개정문구 중 “장애인양궁협회의” 문구 삭제 취소, **제23조(회장의 선출)** ②항의3 “선수 대표 4명(**장애인양궁협회** 선수위원장 1명은 당연직, 선수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3명)”의 개정문구 중 “장애인양궁협회” 문구 삭제 취소, **제23조(회장의 선출)** ⑨항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제9항**에 따르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의 개정문구 중 “제9항” 문구 “**제8항**”으로 수정, **제24조(임원선임)** ⑧항의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장애인체육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 문구 중 “제28조” 문구 “**제29조**”로 개정, **제58조(규정 제·개정)** ①항의 “장애인양궁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장애인양궁협회의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문구 “장애인양궁협회는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장애인양궁협회의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로 개정, 부칙에 “**제2조(경과조치)**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는 이 정관개정 이후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문구 신설, 나머지 기존 개정문구는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된다고 오늘 오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렬 의장

네. 이와 관련하여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대의원들

	<p>없습니다.</p> <p>○이경렬 의장</p> <p>그러면 심의안건 제1호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정관 개정의 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제6조, 제23조 ②항, 제23조 ②항의3, 제23조 ②항의9, 제24조 ⑧항, 제58조 ①항, 부칙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고 나머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그럼 폐회선언 하겠습니다. 2024년 제1차 대의원총회에 참석해주신 대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협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의사봉 3타)</p> <p>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p>
--	---

[붙임2]

2024년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서명록

- 일시 : 2024년 9월 27일(금) 18시
- 장소 : 국가정원 스포스센터 축구경기장B(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814-25)

연 번	직 위	성 명	서 명
1	의 장	이 경 렬	이경렬
2	서울특별시 대의원	정 미 자	정미자
3	부산광역시 대의원	최 용 준	
4	대구광역시 대의원	장 종 길	
5	인천광역시 대의원	김 진 수	
6	광주광역시 대의원	이 종 호	이종호
7	대전광역시 대의원	김 선 공	
8	울산광역시 대의원		
9	경기도 대의원	유 정 만	유정만
10	전라북도 대의원	남 교 현	
11	전라남도 대의원	박 준 철	박준철
12	경상북도 대의원	추 연 경	
13	선수위원장	정 진 영	정진영
14	심판위원장	한 민 경	한민경
15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정 영 주	정영주

□ 참석인원 증빙사진

